

경운대학교 교환학생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운대학교(이하“본 대학”이라 한다)에서 외국대학(자매대학)에 파견하는 교환학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환학생이라 함은 본 대학과 교류협정을 맺고 학생 파견 및 교환에 관한 협정이 체결된 해외교류대학에 유학하는 학생을 칭한다.

제3조(지원자격) 해외교류대학에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지원 할 수 있는 학생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본 대학 재학생 기준으로 하여 본 대학에 2학기 이상 이수하고 7학기 미만, 매 학기당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2. 본 대학에서 이수한 전체 평점 평균이 3.0 이상인 자
3. 해외 교류대학이 지원 자격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해당 대학의 요구 기준에 적합한 자

제4조(업무의 총괄) 교환학생에 관한 일반사항은 인터내셔널센터에서 주관한다.

제5조(기간) 교환학생의 유학기간은 2학기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교류대학과의 협정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제6조(서류제출) 교류대학에 파견 및 교환학생으로 지원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
|-----------------------------|----|
| 1. 해외 교류대학 교환학생 지원신청서(소정양식) | 1부 |
| 2. 소속 학과의 지도교수 추천서(소정양식) | 1부 |
| 3. 성적증명서 | 1부 |
| 4. 재학증명서 | 1부 |
| 5. 보호자 동의서(소정양식) | 1부 |
| 6. “삭제” | |

제8조(선발) 파견 및 교환학생의 선발은 본 대학 인터내셔널센터에서 주관하고, 최종결정은 총장이 한다.

제9조(선발절차 및 기준) 파견 및 교환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1. 교환학생의 선발은 면접과 학과성적(평점평균)으로 선발한다.
2. 면접 100점
3. 학과 성적(평균평점) 100점

제10조(재학기간 및 등록) 교환학생의 재학기간 및 등록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교환학생으로 유학하는 기간은 본 대학 재학기간으로 본다.
- ② 교환학생은 해외 교류대학에 수학하는 동안 본 대학에 소정의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

- ③ 해외 교류대학에서의 수강신청은 해당 대학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 ④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조기 등록이 필요한 경우 매학기 등록기간과 관계없이 조기 등록을 필해야 한다.
- ⑤ 교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에게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학점인정) 교환학생의 학점인정은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삭제>
- ②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각 과정에 대한 학점 인정은 수강신청 과목에 대하여 학기 당 18 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 단, 인정학점 이외의 학점 차액 분은 환불되지 않는다.
- ③ 교류대학에서 수학이 만료된 교환학생은 귀국 후 2주 이내에 학과 지도교수에게 교류 대학에서 발급한 교환학생 수료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교류대학 학점취득 인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④ 학부(과) 지도교수는 수료증명서를(또는 이와 동등한 증명서) 제출한 학생에 대하여 제 7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강신청 과목에 대하여 성적을 부여한다.(단,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성적에 반영할 수 있다.)
- ⑤ 학부(과) 지도교수는 제 4항과 같이 성적을 부여한 후 그 결과를 규정된 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 ⑥ 교환학생이 해외 교류대학에서 수료 증서를 받지 못하거나 또는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평가결과가 점수에 미달될 경우, 학점 불인정 사유에 해당 될 경우에는 학점을 부여하지 않는다.
- ⑦ 교환학생으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 학점으로 인정하되 총 평점 평균에는 반영하지 않는다.(학점(성적)의 인정은 S & U 로 한다)
- ⑧ 교류대학에서 교환학생 기간이 만료된 직후 학기에 본 대학에 복귀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파견 또는 교환학생으로 인하여 취득한 학점은 이를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 ⑨ 교환학생의 수강신청 학점은 한 학기당 18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타대학교에서 취득한 과목은 일반선택으로 인정한다. 단, 전공과목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경운대학교 국내대학과의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에관한규정 별지 서식3호, 별지 서식4호에 따라 소속 학과장의 승인을 받고, 교양과목으로 인정할 경우에는 벽강교양대학장의 승인을 받아 교무처로 학점취득인정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준수사항) 교환학생으로 유학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국가와 본 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2. 해외 교환학생으로서의 본분과 목적이외의 활동을 할 수 없다.
3. 교환 학생은 수업 종료와 더불어 귀국해야 하며, 귀국 후 2주 이내에 인터내셔널센터에 귀국 신고를 하여야 한다.

4. 출·입국 및 해외체류기간 동안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을 진다.
5.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해당 대학의 규정을 이행하지 않아 교류대학의 요구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강제 귀국조치를 취한다.
6. 중도에 수학을 포기하거나, 기간 종료 후 소정의 기한 내에 복학 또는 귀국하지 않은 학생은 등록금이 반환되지 않는다.
7. 파견학생은 외국대학 및 본 대학에서 지정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외국인 학생 수학허가) 교류대학에서 추천한 교류학생에 대하여는 협정 내용에 따라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총장이 수학을 허가할 수 있다.

제14조(외국인 학생 학점교류 신청) 학점교류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본 대학교 인터내셔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본 대학 입학지원서 1부
2. 소속대학 추천서 1부
3. 성적증명서 1부
4. 재학증명서 1부
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되어지는 서류
6. 여권 복사본
7. 한국의 호적등본에 해당되는 증명서 사본

제15조(수학기간) ① 외국대학생의 본 대학교 수학기간은 6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② 외국대학생이 본 대학교 수학기간의 연장을 희망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제16조(과목의 이수 등) ① 외국대학생은 본 대학교와 소속대학 지도교수의 지도를 받아 이수과목을 정하고 각 과목 담당교수의 허가를 얻은 후 해당과목을 수강할 수 있다.

② 매 학기가 종료되면 외국대학생이 이수한 과목에 대한 성적증명서를 발급한다.

③ 교류대학과의 교류내용에 의한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본교의 학기당 최저 이수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제17조(등록금의 납부) ① 교류대학과의 교류내용에 의하여 상호 학비를 면제하기로 한 교환학생의 경우에는 학비를 면제할 수 있으나, 자비유학 및 연수생의 자격으로 수학하는 자는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우리대학의 과정을 이수한 본과 입학생은 일정금액의 외국인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장학금 지급액은 학생처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증명서 발급) ① 수학을 허가 받은 기간 동안 소정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교류 학생에게 이수증서 및 성적증명서를 발급 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의 학칙, 학칙시행세칙 및 학사 내규에 따른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서식 제1호】

외국대학 교환학생 지원 신청서

20 학년도 학기

(접수번호:)

소 속	대학교 학과 학년 학기			사 진 (3×4)
	(부/복수전공)			
주민등록 번호		학 번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주 소			TEL :	
			CELL PHONE :	
병역관계	필() 미필() 면제() 해당무()	E-MAIL :		
파견학년 및 학기	학년 학기 (총 1개 학기)			
외국어 능력	시험종류	점수	(해당자)	
평점 (누계)	/ 4.3			
희망대학	1. ----- (SAIPEKS <input type="checkbox"/> EUKLA <input type="checkbox"/> 일반교환 <input type="checkbox"/>) 2. ----- (SAIPEKS <input type="checkbox"/> EUKLA <input type="checkbox"/> 일반교환 <input type="checkbox"/>) 3. ----- (SAIPEKS <input type="checkbox"/> EUKLA <input type="checkbox"/> 일반교환 <input type="checkbox"/>)			
국제교류원 활동 참가여부	기 간 참가내용(Buddy, 각종도우미활동) : : ~ : : : : ~ : :			
첨부서류	1. 교환학생 입학신청서 (양식 있음) 2. 수학계획서 : 한국어작성해서 영어로 번역 (A4 1매 분량) 3. 교수님추천서 (학과장) 4. 재학증명서(영문) 1 부 5. 성적증명서(영문) 1 부 6. 여권복사본 7. 사진 6 매 8. 건강검진표			
위와 같이 외국대학 교환학생 프로그램 참가를 지원합니다.				
20 년 월 일				
		지 원 자	(인)	
		학 부 모	(인)	

【별지서식 제2호】

보 호 자 서 약 서

학생	성 명		주민등록 번호	
	학부(과)		학 번	학 년
보호자	성 명		주민등록 번호	
	관 계		전 화	
	주 소		휴 대 폰	

위 본인은 경운대학교(이하 “본 대학”이라 한다)의 교환학생 관한규정에 따라 본 대학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본 대학의 해외 교류대학(이하 “자매대학”이라 한다)에서 유학하는 기간동안 본 대학의 명예를 드높이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임을 보호자 연서로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정해진 유학기간과 본 대학의 학칙 등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며, 파견 유학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반드시 귀국하여 본 대학에 등록한다.
2. 본 대학과 해외 자매대학이 체결한 교류협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3. 유학기관으로 지정된 해외 자매대학의 학칙 및 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한다.
4. 유학기간 중 해외 체류국가에서 개인적인 부주의나 시상문제로 발생하는 민사, 형사 등 모든 법적인 문제 및 경제적 문제는 파견학생인 본인과 본인의 보호자가 그 책임을 지며, 본 대학에는 여하한 책임도 요구하지 않는다.
5. 교환학생에 관한 규정 제 11조(학점인정)에 대하여 철저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학점의 인정여부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6. 해외에서 본 대학의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혹은 자매대학에 의해 수학능력 부적격자로 분류되어 본 대학에 통보되는 경우에는 본 대학의 조기 귀국 조치를 따른다.

20 년 월 일

보호자 : (인)

【별지서식 제3호】

교환학생 추천서

학부(과) :

학 년 :

학 번 :

성 명 :

(지원자격 확인사항)

등록여부 :

이수학점 :

성 적 :

교환학생에 관한규정 제3조 지원자격을 확인한 결과, 해당조건에 충족되므로 위
학생을 (대학교) 교환학생으로 추천합니다.

200 년 월 일

지도교수 : (인)

경운대학교 총장 귀하